

'83년형 실학자금 보장보험

1. 실학자금 보장보험(실학자금보장형) 약관
2. 유족연금보험 약관
3. 어린이 상해보험 약관
4. 특약 약관
 - ① 재해사망 특약
 - ② 가족재해 특약

[실학자금 보장보험약관]

제1조【보험의 내용】 ①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학자금 또는 급부금을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학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자금 지급 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학자금을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사망급부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계약에서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시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사망하거나 별표 2에 정한 1급장해(이하 “폐질”이라

합니다) 또는 2급, 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회사의 책임기간】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1회 보험료 가수증을 교부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에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며, 보험증권의 교부는 승낙의 통지로 봅니다. 또한 제1항 후단의 경우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사일)로

- 부터 15일이 지나면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 현재, 계약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임이 명백한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계약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가입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①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시) 청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1년(건강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났을 때.

③ 제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후 해지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4 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 기간 중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집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 방법, 집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5 조【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한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계약의 실효를 미리 알리고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료를 징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징금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지며,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회사가 다시 징금하기로 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납입기일로 하여 제1 항 및 제2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 조【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

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2 조 및 제3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 조【사망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제1 조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계약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3. 피보험자가 고의로 계약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망급부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수의자가 사망급부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③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10 조【학자금, 사망급부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1 조에 정한 학자금, 사망급부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학자금, 사망급부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학자금, 사망급부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 조【학자금, 사망급부금, 해약환급금의 지급 또는 보

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리며 지급하지 아니한 급부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8 조【계약의 무효】 ① 18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계약자로 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② 제1 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9 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보험금액의 감액
3. 수의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 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제10 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학자금, 사망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급부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망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학자금, 사망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학자금, 사망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3 조 제3 항, 제5 조 제2 항 및 제3 항, 제7 조 제2 항, 제9 조 제2 항 및 제3 항)은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별표 3 “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제12 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계약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변경】 ① 수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수의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의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의자에 대하여 도효력이 미칩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 배당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의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5조【계약자 대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

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분쟁심의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계약자의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별표1) 학자금지급기준표

(실학자금보장형)

보험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1종	고등 대학	고등학교입학시입학금 가입형태에따라실제입학금의 100%, 70%, 50%, 30%를지급
	대학	"
	종합	고등, 대학교"
2종	고등	고등학교입학시입학금 및재학시등록금 가입형태에따라실제입학금및등록금의 100%, 70%, 50%, 30%를지급
	대학	대학교입학시입학금및재학시등록금
	종합	고등, 대학교입학시입학금및재학시등록금

단, 1. 당해 피보험자의 실제입학금 또는 등록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연령(정규진학)에 학자금이 필요하지 않게된 경우에도 회사는 정규진학 연령별

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소재 공립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소재 국립종합대학교(인문계)의 입학금 또는 등록금 최고치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학제변경등의 사유로 상기최고치를 알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산출기초에 적용한 학자금 기준치를 예상 등록금 상승율로 체증한 금액을 입학금 또는 등록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해당연령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 (2) 특수학교(사관학교등 국비로 운영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 (3) 전문대학, 초급대학등 4년제미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그 잔여기간
- (4) 상기 기준학교 학자금과 비교하여 학자금이 뚜렷이 낮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 (5) 휴학
- (6) 유급
- (7) 제적
- (8) 기타

2. 학자금의 지급기간은 고등학교는 3년간, 대학

교는 4년간 지급합니다.

3. 실제학자금은 교복과 책값을 제외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수업료, 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등 학자금 납입고지서에 의한 금액 전액을 말합니다.

(별표 2) 장해등급분류표

1 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

2 급	1. 한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또한 다른 한팔이나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4급의 1부터 5까지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급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

9

	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모지 및 인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별표 3) 해약환급금예시표

전기월납, 계약자 18~40세
가입형태 : 100%형 } 기준
(실학자금보장형)
피보험자 : 0 세

구분 경과 기간	1 종합		2 종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10,820	0	79,450	0
6개월	64,920	39,778	476,700	292,124
1년	129,840	98,195	953,400	721,128
2년	259,680	224,479	1,906,800	1,648,506
3년	389,520	360,713	2,860,200	2,648,954
5년	649,200	666,371	4,767,000	4,893,580
10년	1,298,400	1,671,120	9,534,000	12,272,050
15년	1,947,600	2,817,330	14,301,000	21,864,140
18년	"	만기	"	18,687,460
20년			"	7,360,810
22년			"	만기

(단, 당해년도 학자금은 지급된 것으로 계산함)

[유족연금보험약관]

제 1조【보험의 내용】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사망급부금(별표 1 "지급 기준표" 참조)을 드립니다.

-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 선고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 유족연금 지급
- 보험기간중 별표 3에 정한 1급 장해(이하 "폐질"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연금지급. 다만,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장해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이하 같음니다)
- 계약일 이후 2년 이내 별표 2에 정한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폐질 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급부금 지급

②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 3에 정한 2급, 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2조【회사의 책임기간】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회 보험료 가수증을 교부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후에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며, 보험증권의 교부는 승낙의 통지로 봅니다. 또한 제 1항 후단의 경우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임이 명백한 경우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 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 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 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⑤ 사망 급부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가입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

시) 청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동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 항의 질문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사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1년(건강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났을 때

12

③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후 해지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4 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 기간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징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징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5 조【보험료 연체 시 계약의 효력】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계약의 실효를 미리 알리고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료를 징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회

사의 징금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지며,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회사가 다시 징금하기로 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납입기일로 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 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그 다음날로 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6 조【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실효일부터 1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7 조【사망 급부금, 유족 연금, 장해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 1 조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3

에는 사망 급부금, 유족 연금, 장해 연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9 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보험금액의 감액

3. 계약자 또는 수의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가 제 1 항 제 3 호중 수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 까

14

지 이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10조【사망 급부금, 유족연금, 장해 연금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1조에 정한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보험료 납입의 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 증명서(사망 진단서, 장해 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사망 급부금, 유족 연금, 장해연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사망급부금, 유족 연금, 장해 연금의 지급, 보험료의 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 ① 회사는 제10조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사망급부금의 지급 또는 유족연금, 장해연금의 지급을 개시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제1조 제1항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지급할 사망급부금,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3조 제2항,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4항)은 없습니다.

제12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

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감액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변경】 ① 계약자 또는 수의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의자를 대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의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의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의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5조【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

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계약자의 주소 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 드립니다.

(별 표 1)

- 지급기준표 -

급부종류	지급사유	사망급부금		개시연금액	2차년도이후 연금액	연금지급기간
		일시납	월기납			
사망 급부금	계약일 이후 1년이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폐질시	납입보험료전액	계약보험금액의 5%			
	계약일 이후 1년이상 2년이내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폐질시	"	계약보험금액의 10%			
유족연금	계약일 이후 2년이내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2년이후 사망하였을 때			계약보험금액의 10%	개시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 매년 체증한 금액	만기까지지급 되잔여기간이 10년이하인 경우 에는 10년간지급
	계약일이후 2년이내 재해로 인해 폐질상태가 되었거나 2년이후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			"	"	"

단, 장해연금 지급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장해연금 지급일부터 장해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장해연금액과 동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 표 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도로 교통 기관사고
 5. 수상교통 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 기관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18
- ①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 염
 - ② 살모네라성 (Salmonella성) 식중독
 - ③ 세균성 식중독(포도상구균성, Botulinus성)기타 원인 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장해
 - ④ 기아, 갈, 불량환경 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 한다.

-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 장애, 연하 장해 또는 정신 신경 장해 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 목적
- ② 질병의 치료 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6. 법적 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 한다)

17. 전쟁 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제1종 전염병

(별 표 3) 장해등급분류표

1급 (폐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 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되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

19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또한 다른 한팔이나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 중 또는 제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한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6.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2.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9.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10. 한손의 모지 및 인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1.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2.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7.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8.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0.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2.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20

(주 기)

1. “평생 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것을 말한다.

2. “시력을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 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어음 구성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1000,2000,4000㎐의 경우에 청력 상실 정도를 각각 a, b, c, d㏈으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이상(첫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연골의 1/20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 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 관절 및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애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21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관절(모지는 말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모지는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

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표중 제 1급의 5,6,7 또는 8, 제 2급의 1,2,3,제 3급의 5 또는 제 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 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2

[어린이상해보험약관]

제 1조【보험의 내용】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부금을 드립니다.

1. 보험기간중 별표 1에 정한 불의의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길 때 : 상해등급별 약정 급부금

상해등급별 약정 급부금

상해급수	상 해 급 부 금
1 급	계약보험금액의 200%
2 급	“ 140%
3 급	“ 100%
4 급	“ 60%
5 급	“ 30%
6 급	“ 20%

2. 보험기간중 별표 2에 정한 교통사고 이외의 불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 상해등급별 약정 급부금

상해등급별 약정 급부금

상해급수	상 해 급 부 금
1 급	계약보험금액의 100%
2 급	“ 70%
3 급	“ 50%
4 급	“ 30%
5 급	“ 15%
6 급	“ 10%

②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

23

하는 상해금부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만을 드립니다.

③ 제 2 항에 규정한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해가 이미 상해금부금을 지금 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상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해금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④ 제 2 항에 있어서 그 불의의 사고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3 항에 규정하는 상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해에 대하여는 이미 상해금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3 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이전에 발생한 상해로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상해
2. 제 1 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금

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상해 또는 상해금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상해

⑤ 상해로 인한 급부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교통사고로 인한재해상해시 계약보험금액의 200%, 교통사고이외의 재해상해시 계약보험금액의 100%로 합니다.

⑥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사망하거나 별표3에 정한 1급장해(이하 "폐질"이라 합니다)상태 또는 2급, 3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장해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2 조【회사의 책임기간】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 회 보험료가수증을 교부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에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며, 보험증권의 교부는 승낙의 통지로 봅니다. 또한 제 1 항 후단의 경우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 현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임이 명백한 경우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계약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다.

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 1 조 제 5 항에 규정한 자급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가입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시) 청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 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1년(건강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났을 때

③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후 해지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4 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 2 회 이 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집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집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5 조【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계약의 실효를 미리 알리고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료를 징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징금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계속효력을 가지며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회사가 다시 징금하기로 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날을 납입기일로 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 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6 조【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실효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조【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조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사망하게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장해상태가 되게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계약의 무효】 ①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계약자로 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9조【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액의 감액

2. 수의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읍니다. 다만, 청약시까

27

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10조【급부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1조에 정한 급부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부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급부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급부금의 지급, 보험료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

① 회사는 제10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리거나 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급부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제1조 제1항중 1급장해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지급할 급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3조 제3항,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없읍니다.

제12조【전쟁기타 변란시의 급부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급부금을 감액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변경】 ① 수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28

대표자는 다른 수의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의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의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5조【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분쟁심의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 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계약자의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

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드립니다.

29

(별 표 1)

대상이 되는 불의의 교통사고

1.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 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의 교통 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 기관의 승강장구 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 1 호에서 교통기관이라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돛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등
3. 제 2 호의 교통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 1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 일지라도 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 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 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 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

30

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 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 표 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4. 기타 도로 교통 기관사고
5. 수상 교통 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 기관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② 질병의 진단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 ② 살모내라성 (Salmonella 성) 식중독
- ③ 세균성 식중독(포도상구균성 Botulinus 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31

- ③ 여행 및 신체 동요에 의한장해
 - ④ 기아, 갈, 불량환경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연하장해 또는 정신신경 장해 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을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목적
 - ② 질병의 치료 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6.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 항에 규정한 제 1 종 전염병

(별 표 3)

상해등급 분류표

상해급수	신체장해
제 1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32

	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일었을 때	
제 2 급	1. 한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된 때 2. 10손 가락을 일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된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부터 4 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부터 4 까지 중 또는 제 4 급의 1부터 5 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일었을 때	1. 한팔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일었을 때 2. 한팔을 손목이상 일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일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 손가락을 일었거나 모지 및 인	1. 한손의 5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인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일었을 때 2. 한발의 5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 발가락을 일었을 때 4.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 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3

제 5 급	1. 한손의 모지 또는 인지를 일었거나 모지 또는 인지를 포함하여 2 손 가락을 일었거나 모지 및 인지 이외의 3 손 가락을 일었을 때 2. 한손의 모지 및 인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발의 5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 발가락을 일었을 때 4.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 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제 6 급	1. 한손의 모지 또는 인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인지를 포함하여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인지 이외의 2 손가락 또는 3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손의 모지 및 인지 이외의 한손가락 또는 두손가락을 일었을 때	

34

(주 기)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어음구성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이란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덧벌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것”이란 비연골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 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 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35

-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 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 가. “손가락을 잃은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 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 관절(모지는 말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모지는 지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36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 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 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 등급표중 제 1급의 5,6,7 또는 8,제 2급의 1, 2,3제 3급의 5 또는 제 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 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약이 정한 바에따라 피보험자가 별표에 정한 불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신체장애(이하 “폐질”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계약보험금액의 전액을 드립니다. 다만, 폐질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폐질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

37

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2조【특약의 체결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신청에 따라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 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로 하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0세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4조【특약보험료 납입면제】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도 면제됩니다.

제5조【특약의 실효】 ①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할 때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구시 계약자로 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① 제 1 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약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폐질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폐질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폐질 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 3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폐

38

질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특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읍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1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특약의 해약환급금】 이 특약이 실효, 해지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제5조,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해약환급금은 없읍니다.

제12조【주계약의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 표〉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사고
5. 수상 교통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염
 - ② 살모내라성(Salmonella성) 식중독
 - ③ 세균성식중독(포도상 구균성 Botulinus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식중독
 -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

39

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장해
 - ④ 기아, 갈, 불량환경 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연하장애 또는 정신 신경장해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 목적

40

② 질병의 치료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폐질
16.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주 기〉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어음구성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 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③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 000, 2 000, 4 000㎐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덧벌로 했을 때 $1/6(a + 2b + 2c + d)$ 의 값이 80㏈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연골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건관절, 팔꿈치 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41

복)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아래 준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외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 하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 관절(모지는 말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종수 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모지는 지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측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 등급표중 제 1급의 5, 6, 7 또는 8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5 또는 제 4급의 6의 장해

42

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43

(가족재해특약 약관)

제 1조【특약의 내용】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한 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하 “증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별표에 정한 불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한 보험금 또는 상해급부금을 드립니다.

시유별 약정보험금 및 상해급부금표

구 분	배 우 자	자녀 1인당	
1. 특약기간종사망하였을때	계약보험금액의 60%	계약보험금액의 20%	
2. 특약기간 중 상해를 입었을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42% “ 30% “ 18% “ 9% “ 6 %	“ 14% “ 10% “ 6% “ 3% “ 2%

② 제 1 항에 의하여 특약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상해급부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동급에 해당하는 상해급부금만을 드립니다.

③ 제 2 항에 규정한 상해급부금의 지급 사유가 다른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상해급부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해가 이미 상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상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④ 제 2 항에 있어서 그 불의의 사고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3 항에 규정하는 상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해에 대하여는 이미 상해급부금이 지

44

급된 것으로 보고 제 3 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상해로 상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상해
 2. 제 1 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상해 또는 상해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상해
 - (5) 사망 및 상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통산하여, 배우자는 계약보험금액의 60%, 자녀는 1인당 계약보험금액의 20%로 합니다.
 - (6) 제 1 항내지 제 4 항의 경우 상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상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 2 조【종피보험자의 범위,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의 범위는 주피보험자와 동일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 22세 이하의 미혼자녀

② 이 특약의 체결시 제 1 항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이 특약의 체결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③ 이 특약의 체결후에 제 1 항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④ 이 특약의 체결후에 제 1 항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자는 그날로부터 더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3 조【특약의 체결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합니다.

② 이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4 조【특약보험료 납입면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5 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전 까지로 하며 종신 보험의 경우에는 70세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특약의 실효】 ①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7 조【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때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구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특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보험금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 1 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상해급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 8 조【특약의 소멸】 ① 제 1 조 제 1 항의 경우 보험금지급액의 합계액이 통산하여, 배우자는 계약보험금액의 60%, 자녀는 1인당 계약보험금액의 20%에 달하면 제 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약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종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상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종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종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수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2 조【특약의 해약환급금】 이 특약이 실효, 해지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제 2 항, 제 10 조 제 3 항)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3 조【주계약의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 표)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 사고.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 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8. 기타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옹제 기타의 화학 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 ② 살모네라성 (Salmonella성) 식중독.
 - ③ 세균성 식중독 (포도상구균성 Botulinus 성) 기타원 인물명의 세균성 식중독.
 -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까스 및 연기애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장해.
 - ④ 기아, 갈, 불량환경 쪽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연히장해 또는 정신신경 장해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을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48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목적
 - ② 질병의 치료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6.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상해등급분류표

상해급수	신체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점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총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

49

제 3급	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4급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제 5급	4. 한 손의 모지 및 시자를 잃었거나 모지

제 5급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손의 모지 및 시자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제 6급	4.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결손되고 그 가능에 뚜렷한 장해를

50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제 6급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이외의 한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제 6급	

51

〈주 기〉**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어음구성기능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 실의정도를 각각 a, b, c, d 덧벌로 했을 때 $1/6(a + 2b + 2c + d)$ 의 값이 80 덧벌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

이란 비연골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 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

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

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

52

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 지질간 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 관절(모지는 말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모지는 지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

절 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합니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표중 제 1급의 5, 6, 7 또는 8,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5 또는 제 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53